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3조(업무의 주관)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- 1. 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한다.
 - 2.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.
 - 3.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.

제 2 장 대학원 장학위원회

제4조(장학위원회)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대학원 장학금의 예산 및 지급의 기본방향
- 2. 장학금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
- 3.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 3 장 장학금의 종류

제5조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성적장학금
- 2. 교육조교장학금(개정 2017.08.29.)
- 3. 공로장학금, 전문지식인장학금, 학부성적장학금, 외국인장학금(개정 2016.11.29.)
- 4. 연구실적우수교수지원장학금, 신임교수대학원생지원장학금(개정 2016.11.29.)
- 5. 연구활성화장학금, 특성화학과장학금(개정 2016.11.29.)
- 6. 보건의료인장학금
- 7. 재단직원장학금

2-2-6~2 제2편 학 칙

- 8. (삭제 2016.11.29.)
- 9. 전공의지원장려장학금
- 10.기초의약학장학금
- 제6조(성적장학금)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 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육조교장학금) 조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하는 자에게 는 교육조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장학금은 매학기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. 단,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 수혜와 상관없이 지급할수 있다. (개정 2017.08.29.)
- 제8조(공로장학금) 학교명예를 빛낸 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는 장학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6.11.29.)
- 제8조의 2(전문지식인장학금) 관련 전문분야 실무지식이 우수하거나 현장 경험이 뛰어난 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거쳐 전문지식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6.11.29.)
- 제8조의 3(학부성적장학금) 본교 출신 석사·박사과정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부성적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6.11.29., 2018.02.22.)
 - 1. 전체 수석졸업자 :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전체 수업료
 - 2. 단과대학 및 학과(부) 수석졸업자 :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100%
 - 3. 학과(부) 성적 4.25 이상자 :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100%
 - 4. 학과(부) 성적 4.0이상자 :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75%
 - 5. 학과(부) 성적 3.5이상자 :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25%
 - 6. 석·박사통합과정 지원자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중 하나의 학위과정을 선택해서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 4(외국인장학금) 석사·박사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6.11.29.)
 - 1. 협정에 의하여 입학한 외국인 학생
 - 2. TOPIK 4~6급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학생
 - 3. 전체 교육과정을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의 외국인 학생
 - 4. 협정에 의하여 입학한 외국대학의 교직원
 - 5. 외국인 유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학생
- 제9조(연구실적우수교수지원장학금, 신임교수대학원생지원장학금) ①석·박사과

- 정지원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 또는 본교 2년 이내의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연구실적우수교수지원장학금(신임교수대학원생지원장학금)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3.05.31., 2016.11.29.)
- ②연구실적우수교수지원 장학생 추천을 위한 교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13.03.01., 2013.05.31., 2016.11.29.)
- ③추천대상학생은 전업(full time) 학생으로 한정한다.
- ④대학원 연구증진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5.31)
- 제10조(연구활성화장학금) 본교출신 석사·박사과정지원자로서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고 별도로 정한 연구논문을 약정한 자에게는 연구활성화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1.29.)
- 제10조의 2(특성화학과장학금) 대학원 특성화학과로 지정된 학과의 석사·박사 과정지원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별도로 정한 연구논문을 약정한 자에게는 특성화학과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 2016.11.29.)
- 제11조(보건의료인장학금)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재단직원장학금) 학교법인 가천학원 재직직원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3.01)
- 제13조(기초의약학장학금) 기초의학 및 약학과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원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.0점이상인 자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신입생은 성적과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(입학금을 포함한다)을 지급한 다.
- **제14조**(전공의지원장려장학금) 전공의(레지던트) 충원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의학과 전공에 지원한 재단산하 전공의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14조의 2**(기타장학금) (신설 2013.05.31.. 삭제 2016.11.29.)

제 4 장 장학금 지급 및 선발

- 제15조(지급시기) 장학금은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6조(지급기준)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1. 정상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
 - 2. 각종 장학금은 1인 1종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7조(지급제한)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.
 - 1. 휴학자 및 직전학기에 징계를 받은 자

- 2. 기타 품행이 모범적이지 못하고, 직전학기 평균평점 3.0미만인 자
- 제17조의 2(장학금의 반환)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타교로 전학한 자는 마지막 등록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(신설 2017.08.29., 개정 2018.02.22.)
- 제18조(선발기준) 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1. 제6조 의한 성적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A학 점 이상이어야 한다.
 - 2. 선발대상자 중 동일점수일 경우 신청과목수, 학기, 가정형편 등을 고려 하여 선발한다.
 - 3.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전에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야 한다.

제 5 장 회의소집 및 의결

- 제19조(회의소집 및 의결)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1.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.
 - 2.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1.18.)

이 학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학칙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